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
원고, 상고인 1. ○○○ (영문 표시 성명 1 및 생년월일 1 생략)  
[본명: △△△ (영문 표시 성명 2 및 생년월일 2 생략)]  
2. 원고 2 (영문 표시 성명 3 및 생년월일 3 생략)  
3. 원고 3 (영문 표시 성명 4 및 생년월일 4 생략)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 
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3인  
피고,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 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. 7. 5. 선고 2012누19788 판결  
판 결 선 고 2017. 3. 15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#### 1.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

가. 구 출입국관리법(2012. 2. 10.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,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'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,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,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,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.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'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'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입국 경로,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(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두27448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난민인정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, 위 규정에서 말하는 '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'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.

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(2013. 6. 21.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8조의2 제2항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, 여권을 제

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, 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,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, 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,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, 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.

나. (1) 원심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.

(가) 원고 ○○○와 원고 2(이하 '원고 ○○○ 등'이라 한다)는 부부로서 국적이 미얀마이다. 원고 ○○○ 등은 2006. 10. 3.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. 10. 19. 피고에게 "원고 2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인데, 2006. 3. 5.경 원고 ○○○ 등 운영의 생필품 가게에 카렌족의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는 카렌민족연합(Karen National Union, 이하 'KNU'라 한다) 요원 3명이 찾아왔다. 미얀마 정부군이 이를 이유로 가게를 부수면서 가게 주인을 체포·조사하겠다고 말하였다. 따라서 원고 ○○○ 등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."라고 주장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였다. 원고 3은 원고 ○○○ 등의 아들로 2007. 11. 9.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2007. 12. 11. 피고에게 같

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.

또한 원고 ○○○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입국 후 미얀마대사관 앞 집회 등에 참여하였는데, 이로 인하여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.

(나) 피고는 2009. 12. 26.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난민인정결정'이라 한다).

(다) 그런데 피고는 2011. 5.경 원고 ○○○ 등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본명과 불법체류 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(이하 '이 사건 거짓 진술 등'이라 한다)을 발견하였다. 즉, 원고 ○○○의 본명이 사실은 △△△(생년월일 2 생략)으로 2000. 4. 14.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체류하다가 2005. 9. 2. 경 출국하였는데도, 그 인적사항을 ○○○(생년월일 1 생략)로 한 위명(僞名)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후 ○○○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았다. 이에 피고는 2011. 7. 14.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(2) 나아가 원심은,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, 원고들은 원래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거짓 진술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

(가) 원고 ○○○의 성명,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전력은 그 주장 박해사실에 관한 원고 ○○○ 등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. 그런데도 원고 ○○○ 등이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을 함에 따라

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을 하였다.

(나) 원고 ○○○ 등이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을 한 사정에다가 KNU 요원의 최초 방문시기 등에 관한 원고 ○○○ 등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, KNU 요원의 방문 및 그에 따른 박해 우려 주장에 관한 원고 ○○○ 등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.

(다) 또한 원고 ○○○가 대한민국 입국 후 미얀마 민주화 촉구 등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, 참석한 집회의 내용, 방식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○○○ 등이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반정부활동을 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 당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.

(라) 원고 3 역시 원고 ○○○ 등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 별도로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.

다.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난민인정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## 2.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

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·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,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.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·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. 다만 구 출입

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,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원심은, ① 비록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이 사건 거짓 진술 등으로 받은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을 토대로 한 것인 점, ② 하자 있는 이 사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난민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,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·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### 3. 결론

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박보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박병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권순일

주 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김재형